

서울특별시의회
제324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

2024. 6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박중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,

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

주·정차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

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

□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자,

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

의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대책 마련 조항을

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,

계획 수립 시,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

주·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또한, 안전교육으로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
이용자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
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근절에 관한
조항 신설을 통해 보행자 및 이용자의 장치 안전교육의
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3조제5항의 경우,
시장의 책무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
의무 준수사항 이행 대책 마련 사항을 신설하였으며,

- 안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,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 수립 시,
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방법 및
주·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,
안전교육 시, 보행자 안전을 위한
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
개인형 이동장치의 주·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조항을
신설하였습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